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3일 15시 43분



목차

목차	2
긴급복지	3
긴급지원제도란?	3
긴급지원대상자(위기상황)	3
긴급지원내용	3
적정성 판단 기준(2024년 기준)	4
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75%이하	4
재산기준	4
금융재산 기준	4
지원요청 및 신고	4
신청 절차	4
신청 및 문의처	5
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	저소득층의료급여제도	긴급복지	노숙인발생처리 및 귀가조치
영구임대아파트 현황	이재민구호비지급기준	기부식품제공	위기가구 사례관리
기초수급 맞춤형 급여 및 현황	자활사업안내	지역사회복지자원 현황	의료급여대상자 현황
국민건강보험료 지원	기초생활보장사업 기금 용자	복지서비스 모의계산 ㄱ	복지시설
사회복지법인 및 시설	희망성금모금		

보건복지콜센터 - 시군구 연계 상담안내 전화 사회복지 상담·안내는 국번 없이 ☎129 또는 ☎061-659-3682

긴급지원제도란?

주소득자가 사망, 가구구성원의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고, 사후에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제도

긴급지원대상자(위기상황)

- 주소득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급시설에 수용 등과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소득상실한 경우
- 가정폭력·학대, 화재로 인한 주거가 곤란한 경우
-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(휴폐업, 실직, 출소자, 노숙인)

긴급지원내용

종류	지원내용	기간	
금전·지원	생계지원	▪ 생계유지비 지원	3개월
	의료지원	▪ 각종검사,치료등 의료서비스 지원-300만원 이내 (※ 퇴원 후 지원불가)	1회
	주거지원	▪ 임시거소제공 또는 이에 해당되는 비용 지원	3개월
	교육지원	▪ 초·중·고 수업료,입학금등 필요한 비용 지원	1회(분기단위)
	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	▪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	3개월
		▪ 동절기(10~3월) 연료비: 150,000원	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기타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해산비: 70만원, 장제비: 80만원 · 전기요금은 최대 50만원 	1회
민간기관·단체 연계지원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민간 긴급지원 프로그램 연계 · 기타 상담 등 	수시

적정성 판단 기준(2024년 기준)

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75%이하

가구규모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원/월	1,671,334	2,761,957	3,535,992	4,297,434	5,021,801	5,713,777

 재산기준

지역	대도시	중소도시	농어촌
금액(만원)	241,000	152,000	130,0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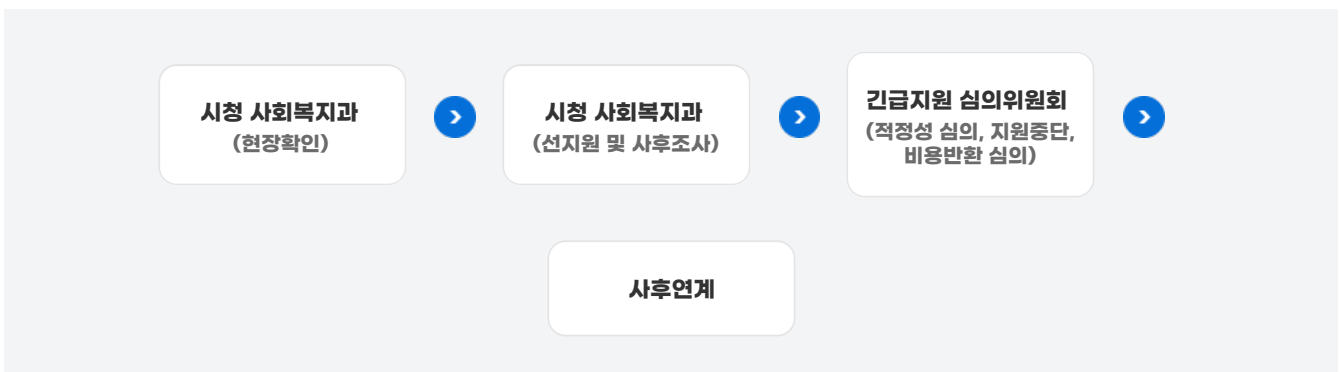
 금융재산 기준

가구원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금액	8,228천원	9,682천원	10,714천원	11,729천원	12,695천원	13,618천원

지원요청 및 신고

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, 시청 사회복지과

신청 절차



신청 및 문의처

주소지 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, 시청 사회복지과(☎061-659-3670)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